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3. 12. 22.

저작귀

국제회계기준(IFRSs) 및 부속 출판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가 발표한 것입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5 IFRS Foundation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국제회계기준재단(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oundation: IFRS Foundation) 및 이 출판물의 저작자와 출판자는, 이 출판물에 의거하여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은 자의 부주의 등 여하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제회계기준(IAS) 및 해석서(Interpretations)를 포함하는 국제회계기준(IFRSs)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IFRSs)의 정본은 IASB가 발표한 영문판입니다. 사본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출판 및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모든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국제회계기준재단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이 없이, 이 출판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번역, 재인쇄, 재출간 또는 전자, 기계 또는 기타의 방법(복사와 리코딩을 포함한 정보저장과 검색의 방법으로서 알려진 것과 이후 개발될 것을 포함)에 의한 형태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재단의 동의 하에 국제회계기준과 이 출판물에 포함된 관련 문서들의 한국어 번역을 승인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에 대한 저작권은 국제회계기준재단에게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은 국제회계기준재단이나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3층, 04513, 전화: +82 (0)2 6050-0150, 팩스: +82 (0)2 6050-0170, 이메일: webmaster@kasb.or.kr, 홈페이지: www.kasb.or.kr

국제회계기준재단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의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사용과 관련하여, 한국어로 구성된 일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 또는 채택한 번호가 매겨진 모든 국제회계기준(IAS) 및 국제재무보고기준(IFRS)의 본문,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S IC)나 상설해석위원회(SIC)가 발표한 해석서의 본문(이하 '기준서 본문')으로 구성됩니다.

한국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서 본문을 한국어로 재출간할수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재단은 한국 이외 지역에서의 모든 권리와 한국 내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한국어로 구성된 기준서 본문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COPYRIGHT NOTIC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together with their accompanying documents are issued by th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246 6410 Fax: +44 (0)20 7246 6411

Email: info@ifrs.org Web: www.ifrs.org

Copyright © 2025 IFRS Foundation

The IASB, the IFRS Foundation, the authors and the publishers do not accept responsibility for loss caused to any person who acts or refrains from acting in reliance on the material in this publication, whether such loss is caused by negligence or otherwise.

IFRSs (which includ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Interpretations) are copyrigh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Foundation. The authoritative text of IFRSs is that issued by the IASB in the English language. Copies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Please address publication and copyright matters to:

IFRS Foundation Publications Department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Tel: +44 (0)20 7332 2730 Fax: +44 (0)20 7332 2749 Email: publications@ifrs.org Web: www.ifrs.org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translated, reprinted or reproduced or utilised in any form either in whole or in part or by any electronic, mechanical or other means, now known or hereafter invented, including photocopying and recording, or in any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prior permission in writing from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and related material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has been approved by the Korea Accounting Standards Board in Korea with the permission of the IFRS Foundation. The Korean translation is the copyright of the IFRS Foundation. Copies of the Korean translation may be obtained from the IFRS Foundation or the KASB, KCCI Building 3rd Flr., 39 Sejong-daero, Jung-gu, Seoul, 04513, Korea.

Tel: +82 (0)2 6050 0150 Fax: +82 (0)2 6050 0170 Email: webmaster@kasb.or.kr

Web: www.kasb.or.kr

The IFRS Foundation has waived the right to assert its copyright in certain materials in the Korean language, such materials consist of all numbered, bar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 in the form that they are issued or adopted by the IASB, or Interpretations issued by the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S IC) or Stand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SIC)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sovereign consent and in connection with any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oduction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is permitted for any use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and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IFRS Foundation reserves all right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 any use other than use of the integral part of the standards in the Korean language by any foreign subsidiary, joint venture, associate or branch of a corporation, which resides in the Republic of Korea.



목 차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문단번호
목적	1~2
적용	한3.1
적용범위	3~7
용어의 정의	8~16
정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	8A~16
환산방법의 요약	17~19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현물환율의 추정 (문단	19A
A11~A17)	
기능통화에 의한 외화거래의 보고	20~37
최초 인식	20~22
후속 보고기간말의 보고	23~26
외환차이의 인식	27~34
기능통화의 변경	35~37
기능통화가 아닌 표시통화의 사용	38~49
표시통화로의 환산	38~43
해외사업장의 환산	44~47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일부 처분	48~49
외환차이로 인한 법인세효과	50
공시	51~57B
시행일과 경과규정	58~60M
기준서 등의 대체	61~62
부록 A. 적용지침	A1~A20
교환가능성	A1~A20
1단계: 통화가 교환 가능한지 평가 (문단8과 8A~8B)	A2~A10

목 차

2단계: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현물환율의 추정 A11~A17 (문단19A)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의 공시 A18~A20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 결론도출근거, 기타 참고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준서를 적용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시된다.

[적용사례·실무적용지침]

적용사례 (IE1~IE18)

[결론도출근거]

IAS 21의 결론도출근거 (BC1-BC65)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제·개정 경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는 문단 1~62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단에는 동등한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의 목적, 결론도출근거, '기업회계기준 전문' 및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배경으로이해하여야 한다.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따른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목적

- 기업은 외화거래나 해외사업장의 운영과 같은 방법으로 외화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또 기업은 재무제표를 외화로 표시하기도 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외화거래와 해외사업장의 운영을 재무제 표에 반영하는 방법과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정 하는 데 있다.
- 이 기준서는 외화환산에 사용하는 환율의 결정과 환율변동의 효과를 재무제표에 보고하는 방법을 다룬다.

적용

한3.1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대상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또한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선택하거나 다른 법령 등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업의 회계처 리에도 적용한다.

적용범위

- 3 이 기준서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 (1) 외화거래와 외화잔액의 회계처리(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 융상품'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외화파생상품 거래와 잔액 제외)
 - (2) 연결재무제표 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의 환산
 - (3)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

-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많은 외화파생상품에 적용되므로 이러한 외화파생상품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지 않는 외화파생상품(예: 기타 계약에 내재된 일부 외화파생상품)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또 이 기준서는 파생상품과 관련된 금액을 기능통화에서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5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위험회피 등과 같은 외화 항목에 대한 위험회피회계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를 외화로 보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그에 따른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기재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규정한다. 또 이 기준서는 재무정보를 외화로 환산함에 있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공시하여야하는 정보를 규정한다.
- 이 기준서는 외화거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을 현금흐름표에 보고하 거나 해외사업장의 현금흐름을 환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참조).

용어의 정의

8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참조)

교환 가능한. 기업이 일정 기간(정상적인 행정 처리상의 지연을 포함) 내에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에 따른 교환거래에서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함으로써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바꿀 수 있다면, 그 통화는 다른 통화와 교환 가능하다.

기능통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

마감환율. 보고기간말의 현물환율

연결실체: 지배기업과 그 지배기업의 모든 종속기업

외화.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

의환차이: 특정 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변동된 환율을 사용하여 다른 통화로 환산할 때 생기는 차이

표시통화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

해외사업장: 보고기업과 다른 국가에서 또는 다른 통화로 영업활동을 하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약정이나 지점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에 대한 보고기업의 지분 해당 금액

현물환율: 즉시 인도가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사용하는 환율

화폐성항목. 보유하는 화폐단위들과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화폐 단위 수량으로 회수하거나 지급하는 자산·부채

환율: 두 통화 사이의 교환비율

정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 교환 가능한 (문단 A2~A10)

- 8A 기업은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지를
 - (1) 측정일에 그리고
 - (2) 특정 목적을 위해 평가한다
- 8B 기업이 특정 목적을 위해 측정일에 다른 통화를 단지 경미한 금액 만 획득할 수 있다면, 그 통화는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

기능통화

- 9 일반적으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은 주로 현금을 창출하고 사용하는 환경을 말한다. 기능통화를 결정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1) 다음의 통화
 - (가)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흔히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을 표시하고 결제하는 통화)
 - (山)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을 주로 결정하는 경쟁요인과 법규 가 있는 국가의 통화
 - (2)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 드는 노무원가, 재료원 가와 그 밖의 원가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흔히 이러한 원 가를 표시하고 결제하는 통화)
- 10 다음 사항도 기능통화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1) 재무활동(즉,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조달되는 통화
 - (2) 영업활동에서 유입되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통화
- 11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를 결정할 때 그리고 이러한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보고기업(여기서 보고기업은 종속기업, 지점, 관계기업, 공동약정 형태로 해외사업장을 갖고 있는 기업)의 기능통화와 같은 지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 (1) 해외사업장의 활동이 보고기업 활동의 일부로서 수행되는지 아

니면 상당히 독자적으로 수행되는지

- (가) 해외사업장이 보고기업에서 수입한 재화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보고기업으로 송금하는 역할만 한다면 해외사업장이 보고기업의 일부로서 활동하는 예에 해당한다.
- (내) 해외사업장이 대부분 현지통화로 현금 등의 화폐성항목을 축적하고 비용과 수익을 발생시키며 차입을 일으킨다면 해 외사업장의 활동이 상당히 독자적으로 수행되는 예에 해당 한다
- (2) 보고기업과의 거래가 해외사업장의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지 낮은지
- (3) 해외사업장 활동에서의 현금흐름이 보고기업의 현금흐름에 직접 영향을 주고 보고기업으로 쉽게 송금될 수 있는지
- (4) 보고기업의 자금 지원 없이 해외사업장 활동에서의 현금흐름만 으로 현재의 채무나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채무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 12 문단 9~11의 지표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여 기능통화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영진이 판단하여 실제 거래, 사건과 상황의경제적 효과를 가장 충실하게 표현하는 기능통화를 결정한다. 이때 경영진은 기능통화를 결정하는 데 추가적인 보조 증거를 제공하는 문단 10과 11의 지표를 고려하기 전에 문단 9의 주요 지표를 우선하여 고려한다.
- 13 기능통화는 그와 관련된 실제 거래, 사건과 상황을 반영한다. 따라서 일단 기능통화를 결정하면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제 거래, 사건과 상황에 변화가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 14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일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이 기준서에 따라 결정되는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

화(예: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는 방법 등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의무를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 15 기업이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 성항목 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실질적으로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로 문단 32와 33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이러한 화폐성항목에는 장기 채권이나 대여금은 포함될 수 있으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15A 문단 15에서 언급한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항목을 보유하는 기업은 연결실체의 어떤 종속기업이든 가능하다. 예를 들어 종속기업 A와 B를 소유한 기업이 있으며 종속기업 B는 해외사업장이다. 종속기업 A가 종속기업 B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이 대여금이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다면, 종속기업 A의 대여금은 종속기업 B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가 된다. 종속기업 A가 해외사업장인 경우에도 이러한 관계는 똑같이 성립한다.

화폐성항목

16 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로 지급하는 연금과 그 밖의 종업원급여, 현금으로 상환하는 충당 부채, 리스부채, 부채로 인식하는 현금배당 등이 화폐성항목에 속한 다. 또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나 금액이 확 정되지 않은 자산을 받거나 주기로 한 계약의 공정가치가 화폐단위 로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다면 이러한 계약도 화폐성항목에 속한다. 반면에 비화폐성항목의 본질적 특징은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선급금, 영업권, 무형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사용권자산, 비화폐성 자산을 인도하여 상환하는 충당부채 등이 비화폐성항목에 속한다.

환산방법의 요약

- 77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해외사업장이 없는 기업, 지배기업과 같은 해외사업장이 있는 기업이나 종속기업이나 지점과 같은 해외사업장을 모두 포함)은 문단 9~14에 따라 기능통화를 결정한다. 문단 20~37과 문단 50에 따라 외화항목을 기능통화로 환산하고 그 환산효과를 보고한다.
- 많은 보고기업이 다수의 개별기업으로 구성된다(예: 연결실체는 지배기업과 하나 이상의 종속기업으로 구성).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관계기업, 공동약정이나 지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보고기업에 속해 있는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보고기업이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통화로 환산한다. 보고기업은 어떤 통화든지 표시통화로 사용할 수 있다. 보고기업에 속해 있는 각 기업의 기능통화가 보고기업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에는 그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문단 38~50에 따라 표시통화로 환산한다.
- 19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해외사업장이 없는 기업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도 재무제표를 어떤 통화로도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의 표시통 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문단 38~50에 따라 표시통화로 환산한다.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현물환율의 추정 (문단 A11~A17)

19A (문단 8, 8A~8B와 A2~A10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측정일에 현물환율을 추정한다.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기업의 목적은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적 교환 거래에 적용되었을 환율을 반영하는 것이다.

기능통화에 의한 외화거래의 보고

최초 인식

- 20 외화거래는 외화로 표시되어 있거나 외화로 결제되어야 하는 거래 로서 다음을 포함한다.
 - (1) 외화로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재화나 용역의 매매
 - (2) 지급하거나 수취할 금액이 외화로 표시된 자금의 차입이나 대
 - (3) 외화로 표시된 자산의 취득이나 처분, 외화로 표시된 부채의 발생이나 상환
- 21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 22 거래일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이다. 실무적으로는 거래일의 실제 환율에 근접한 환율을 자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발생하는 모든 외화거래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된 경우에 해당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후속 보고기간말의 보고

- 23 매 보고기간말의 외화환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 (2)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 (3)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측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 24 장부금액은 이 기준서 이외의 관련된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 따라 공정가치나 역사적원가로 측정할 수 있다.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든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든 장부 금액이 외화로 결정된다면 이 기준서에 따라 기능통화로 환산한다.
- 25 둘 이상의 금액을 비교하여 장부금액이 결정되는 항목이 있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에 따라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한다. 또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자산의 장부금액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잠재적 손상차손을 고려하기 전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이러한 자산이 비화폐성항목이고 외화로 측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를 비교하여 장부금액을 결정한다.
 - (1) 그 금액이 결정된 날의 환율(즉, 역사적원가로 측정한 항목의 경우 거래일의 환율)로 적절하게 환산한 취득원가나 장부금액
 - (2) 그 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예: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적절하게 환산한 순실현가능가치나 회수가능액
 - 위 (1)과 (2)를 비교하는 경우 기능통화를 기준으로 할 때는 손상차 손을 인식하나 외화를 기준으로 할 때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 26 여러 가지 환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나 잔액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이 측정일에 발생하였다면 결제하였을 환율을 사용한다.

외환차이의 인식

- 27 문단 3(1)과 5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외화항목에 대한 위험 회피회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는 이 기준서의 외환차이 규정과 다르게 회계처 리한다. 예를 들어,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요건을 갖춘 화폐성항 목에 대한 외환차이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업회계기준 서 제1109호에 따라 처음부터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한다.
- 28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 또는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문단 32에서설명하는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분류하는 외환차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9 외화거래에서 화폐성항목이 생기고 거래일과 결제일의 환율이 변동된 경우에 외환차이가 나타난다. 거래가 발생한 회계기간에 결제되는 경우에는 모든 외환차이를 그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그러나 거래가 후속 회계기간에 결제되는 경우에는 각 회계기간의 환율변동에 따 른 외환차이를 결제일까지 각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 30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31 이 기준서 이외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손익을 기타포 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의 재평가에 서 생기는 평가손익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기타포괄손

익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자산이 외화로 측정된다면 문단 23(3)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평가금액을 환산하며 이때 생기는 외환차이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32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문단 15 참조)는 보고기업의 별도재무제표나 해외사업장의 개별재무제표에서 당기손익으로 적절하게 인식한다. 그러나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재무제표(예: 해외사업장이 중속기업인 경우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이러한 외환차이를 처음부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문단 48에 따라 관련 순투자의 처분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최3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이 보고 기업의 기능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문단 28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개별재무제표에 외환차이가 생긴다. 이러한 화폐성항목이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문단 28에 따라 보고기업의 별 도재무제표에 외환차이가 생긴다. 이러한 화폐성항목이 보고기업 이나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문단 28에 따라 보고기업의 별도재무제표와 해외사업장의 개별재무제표에 외환차이가 생긴다. 이러한 외환차이는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재무제표(즉, 연결재무제표 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에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34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로 장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모든 금액을 문단 20~26에 따라 기능통화로 환산한다.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장부를 기능통화로 기록하여 재무제표를 작 성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예를 들어, 화폐성항목은 마감환율을 사용하여 기능통화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기준으로 측정한 비화폐성 항목은 그 항목을 인식한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한다.

기능통화의 변경

- 35 기능통화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에 의한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적용한다.
- 36 문단 13에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능통화는 기업과 관련된 실제 거래, 사건과 상황을 반영한다. 따라서 일단 기능통화가 결정되면 이러한 실제 거래, 사건과 상황에 변화가 일어난 경우에만 기능통화를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격에 주로영향을 미치는 통화의 변경은 기능통화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다.
- 37 기능통화의 변경에 따른 효과는 전진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즉, 기 능통화가 변경된 날의 환율을 사용하여 모든 항목을 새로운 기능통 화로 환산한다. 비화폐성항목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로 환산 한 금액이 역사적원가가 된다. 문단 32와 39(3)에 따라 이전에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의 환산에서 생긴 외환차이는 해 외사업장을 처분할 때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기능통화가 아닌 표시통화의 사용

표시통화로의 환산

- 38 재무제표는 어떠한 통화로도 보고할 수 있다.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한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기능통화를 사용하는 개별기업으로 구성되는 연결 실체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각 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 상태를 같은 통화로 표시한다.
- 39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경영성과와 재 무상태를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 다.

- (1) 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 (2) 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 (3) 위 (1)과 (2)의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40 실무적으로 수익과 비용항목을 환산할 때 거래일의 환율에 근접한 환율(예: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을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한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 41 문단 39(3)에서 언급한 외환차이의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 (1)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자산과 부채는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 (2) 순자산의 기초 잔액을 전기의 마감환율과 다른 마감환율로 확산하다.
 - 이 환율의 변동은 현재와 미래의 영업현금흐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거의 미치지 않으므로 이러한 외환차이는 당기손 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이 처분될 때까지 자본의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보고기업이 지분을 전부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결실체에 포함되는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 중 비지배지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연결재무상태표의 비지배지분으로 배분하여 인식한다.
- 42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인 경우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모든 금액(즉, 자산, 부채, 자본항목, 수익과 비용. 비교표시되는 금액 포함)을 최근 재무상태표 일자의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 (2) 다만, 금액을 초인플레이션이 아닌 경제의 통화로 환산하는 경

우에 비교표시되는 금액은 전기에 보고한 재무제표의 금액(즉, 전기 이후의 물가수준변동효과나 환율변동효과를 반영하지 않 은 금액)으로 한다.

43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인 경우 문단 42의 환산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다만, 초인플레이션이 아닌 경제의 통화로 환산하여 비교표시된금액은 재작성하지 아니한다(문단 42(2) 참조). 초인플레이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에 따라 더 이상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재작성을 중지한 날의물가수준으로 재작성한 금액을 표시통화로 환산하기 위한 역사적원가로 사용한다.

해외사업장의 환산

- 44 해외사업을 연결 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보고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문단 38~43과 문단 45~47을 적용한다.
-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연결하는 경우 연결실체내 잔액 제거와 종속기업의 연결실체내 내부거래제거와 같은 정상적인 연결절차를 수행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 제표' 참조). 그러나 내부거래에서 생긴 화폐성자산(또는 화폐성부채)은 장단기 여부에 관계없이, 대응하는 화폐성부채(또는 화폐성자산)와 상계하더라도 관련된 환율변동효과는 연결재무제표에 나타나게 된다. 내부거래에서 생긴 화폐성항목도 특정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하는 과정이 따르므로 환율변동으로 보고기업의 손익이 영향을 받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외환차이는 연결재무제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문단 32의 상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해외사업장이 처분될 때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누계한다.

- 46 해외사업장과 보고기업의 보고기간말이 다른 경우, 보고기업의 보고 기간말 현재로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보고기간말의 차이가 3개월 이내이고 그 기간동안 있었던 유의적인 거래나 기타 사건의 영향을 반영한 경우에는 보고기업의 보고기간말이 아닌 해외사업장 보고 기간말 현재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해외사업장의 보고기간말 현재의 환율로 환산한다. 그리고 보고기업의 보고기간말까지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그 영향을 반영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2011년 개정)에 따라 관계기업이나 공동 기업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 47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부채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문단 39와 42에 따라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일부 처분

- 48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 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 분류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참조).
- 48A 해외사업장에 대한 기업의 전체지분의 처분뿐만 아니라 다음의 부분적 처분의 경우에도 처분으로 회계처리한다.
 - (1) 부분적 처분 후에도 이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유지하는 는지에 상관없이, 부분적 처분으로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 (2) 공동약정의 지분의 부분적 처분이나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

기업에 대한 지분의 부분적 처분 이후 보유하는 지분이 해외사 업장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경우

- 48B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의 처분시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는 않는다.
- 48C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킨다.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때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 48D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의 일부 처분은, 처분으로 회계처리하는 문단 48A의 소유지분의 감소를 제외한, 해외사업장에 대한 소유지분의 모든 감소를 말한다.
- 49 해외사업장의 매각, 청산, 자본의 환급 또는 해외사업장 전체나 일부를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 전체나 일부를 처분 할 수 있다. 해외사업장의 손실 또는 투자자가 인식한 손상으로 인한 해외사업장의 장부금액에 대한 감액의 인식은,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외환손익은 감액을 인식한 시점에 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한다.

외환차이로 인한 법인세효과

50 외화거래에 따른 손익과 기업(해외사업장 포함)의 경영성과와 재무 상태를 다른 통화로 환산함에 따라 생기는 외환차이로 법인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법인세효과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한다.

공시

- 51 연결실체의 경우, 문단 53과 문단 55~57에서의 '기능통화'는 지배기 업의 기능통화를 의미한다.
- 52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차이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외 환차이는 제외한다.
 - (2)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별도의 자본항목에 누계한 순외환차이, 기초와 기말 금액 및 그 변동 내역
- 53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능통화의 명칭과 기 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를 사용하는 이유와 함께 공시한다.
- 54 보고기업이나 유의적인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과 기능통화가 변경되는 이유를 공시한다.
- 7)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문단 39와 42의 환산방법을 포함하여 관련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및 해석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따른 경우에 한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다.
- 56 문단 55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고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재무제표나 그 밖의 재무정보를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의 일부 항목만을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환산하거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기업이 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을 다른 통화의 최근의 마감환율로 환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환산이 아니므로 문단 57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57 재무제표나 그 밖의 재무정보를 기능통화나 표시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하고 문단 55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시한다.
 -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정보와 구별되도록 해당 정보가 보충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
 - (2) 보충정보를 표시하는 통화
 - (3) 기능통화의 명칭과 보충정보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환산방법
- 57A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아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경우(문단 19A 참조),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기업의 재무성과,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에 대해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수 있는 정보를 공시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 (1)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는 상황의 성격 및 재무적 영향
 - (2) 사용된 현물환율
 - (3) 추정 프로세스
 - (4)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음으로 인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
- 57B 문단 A18~A20에서 기업이 문단 57A를 적용하는 방법을 명시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 58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58A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59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취득하는 해외사업장에는 문단 47을 전진적용한다.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 하는 보고기간의 개시일 전에 취득한 해외사업장에는 소급적용할 수 있다.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기 전에 해외사업장을 취득하

였지만 (동 기준을) 전진적용하는 경우에는 과거연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공정가치 조정액을 해외사업장의 자산·부채가 아닌 보고기업의 자산·부채로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영업권과 공정가치 조정액은 이미 보고기업의 기능통화로 표시되어 있거나 혹은 비화폐성 외화항목으로서 취득일의 환율을 이용하여 보고된다.

- 60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생기는 그 밖의 모든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60A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한60A.1 이 기준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다.
- 한60A.2 이 기준서를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는 문단 60B를 적용한다.
- 60B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는 이 기준서의 문단 48A~48D를 추가하고 문단 49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09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2008년 개정)를 조기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 내용도 동시에 적용한다.
- 60C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60D 문단 60B는 2010년 10월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에 의하여 개정되었다. 동 개정내용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 60E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60F 2011년 11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은 문단 3(2), 8, 11, 18, 19, 33, 44~46, 및 48A를 개정한다. 동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제111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60G 2011년 12월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따라 문단 8의 공정가치에 대한 정의가 개정되었으며 문단 23이 개정되었다. 이러 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 60H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60I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 60J 2015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문단 3, 4,
 5, 27, 52를 개정하고 문단 60C, 60E, 60I를 삭제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 60K 2017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문단 16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때 적용한다.
- 60L 2023년 12월에 발표된 '교환가능성 결여'는 문단 8과 26을 개정하고 문단 8A~8B, 19A와 57A~57B와 부록 A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 내용의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조기 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최초 적용일은 기업이 이러한 개정을 최초로 적용하는 연차보고기간의 개시일이다.

- 60M '교환가능성 결여'를 적용할 때 비교정보를 재작성하는 대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보고하는 경우로서 최초 적용일에 기능 통화가 외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거나, 외화가 기능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면, 최초 적용일에 다음과 같이 적 용한다.
 - (가) 영향을 받는 화폐성 외화항목과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 폐성 외화항목을 해당 날짜의 추정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환 산하다.
 - (내) 최초 적용효과를 기초 이익잉여금의 조정으로 인식한다.
 - (2) 기업이 기능통화 이외의 표시통화를 사용하거나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환산하는 경우로서 최초 적용일에 기업 의 기능통화(또는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표시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거나, 표시통화가 기업의 기능통화(또는 해외사업장 의 기능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면, 최초 적 용일에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를 해당 날짜의 추정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한다.
 - (내) 기업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인 경우 영향을 받는 자본 항목을 추정 현물화율을 사용하여 확산한다.
 - (다) 최초 적용효과를 누적환산차이(자본의 별도항목)에 대한 조 정으로 인식하다.

기준서 등의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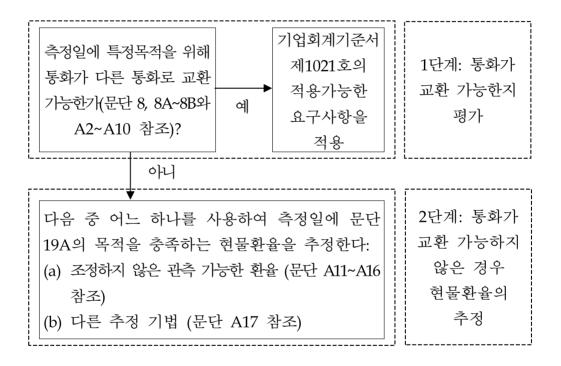
- 6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 62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부록 A. 적용지침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교환가능성

A1 다음 도표의 목적은 기업이 한 통화가 교환 가능한지 평가하고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1단계: 통화가 교환 가능한지 평가 (문단 8과 8A~8B)

A2 문단 A3~A10은 기업이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용지침을 제시한다. 기업은 다른 통화가 해당 통화로 교환 가능하더라도 그 해당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통화 LC를 통화 PC로 교환가능하더라도 통화 PC는 통화 LC로 교환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기간범위

A3 문단 8에서는 현물환율을 즉시 인도가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사용하는 환율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교환거래에 법적 또는 규제 요구사항이 적용되거나 법정공휴일과 같은 실무적 이유로 인해 교환거래가 항상 즉 각적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통화를 획득하는 데 정상적인 행정 처리상의 지연이 있다고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행정 처리상의 지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

다른 통화를 획득할 능력

A4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지를 평가할 때, 기업은 다른 통화를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도나 결정이 아닌 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2~A10의 다른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기업이 통화를 교환할 의도가 없거나 교환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통화를 획득할 수 있다면 그 통화는 다른 통화로 교환가능하다. 예를 들어 문단 A2~A10의 다른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기업이 LC를 PC로 교환하거나, LC를 다른 통화(FC)로 교환한 다음 FC를 PC로 교환할 수 있다면, 기업이 PC를 획득할 의도 또는 결정 여부에관계없이, 통화 LC는 통화 PC로 교환 가능하다.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

A5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지를 평가할 때, 기업은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하는 거래가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만을 고려한다. 집행가능성은 법률 상의 문제이다.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에서 교환 거래가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지는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

다른 통화의 획득 목적

A6 통화의 용도에 따라 다른 환율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급잔액 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국가에서는 다른 국가로의 자본 송금(배당

지급 등)을 억제하고자 하는 반면, 이러한 국가로부터 특정 상품의 수입을 장려하려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국가는 다음 중 어느하나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 (1) 해당 상품의 수입에 특혜성 환율을 설정하고 다른 국가로의 자본 송 금에 벌칙성 환율을 설정하여 서로 다른 교환거래에 다른 환율이 적용되도록 한다.
- (2) 다른 국가로의 자본 송금이 아닌 해당 상품의 수입에 대해서만 다른 통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A7 따라서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지 여부는 기업이 다른 통화를 획득하는 (또는 획득을 가정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교환 가능성을 평가할 때, 다른 통화를 획득하는 목적은 다음을 가정한다.
 - (1) 기업이 기능통화로 외화 거래를 보고하는 경우(문단 20~37 참조), 개별 외화거래, 자산 또는 부채를 실현하거나 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 른 통화를 획득하다.
 - (2) 기업이 기능통화가 아닌 표시통화를 사용하는 경우(문단 38~43 참조), 기업의 순자산 또는 순부채를 실현하거나 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통화를 획득한다.
 - (3) 기업이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경우(문단 44~47 참조), 해외사업장에 대한 기업의 순투자를 실현하 거나 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통화를 획득한다.
- A8 기업의 순자산이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실현될 수 있다.
 - (1) 기업 소유주에 대한 재무적 수익의 분배
 - (2) 기업의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재무적 수익의 수령
 - (3) 투자의 처분 등을 통한 기업 또는 기업 소유주의 투자금 회수
- A9 기업은 문단 A7에 명시된 각 목적에 따라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가능한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법인은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보고하기 위한 목적의 교환가능성(문단 A7(1) 참조)과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환산하기 위한 목적의 교환가능성(문단 A7(3) 참조)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다른 통화를 단지 제한적인 금액만 획득할 수 있는 능력

A10 문단 A7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다른 통화를 단지 경미한 금액만 획득할 수 있는 경우 그 통화는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 특정 목적을 위해 획득할 수 있는 다른 통화 금액의 유의성은 그 목적상 필요한 다른 통화의 금액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예를 들어 기능통화가 LC인기업이 통화 FC로 표시된 외화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은 FC로 표시된 외화부채 잔액의 총액(합계)과 비교하여 해당 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기업이 획득할 수 있는 FC의 금액이 경미한지 평가한다.

2단계: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현물환율의 추정 (문단 19A)

A11 이 기준서는 기업이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방법을 명시하지 않는다. 기업은 관측 가능한 환율을 조정 없이 사용하거나 (문단 A12~A16 참조) 또는 다른 추정 기법(문단 A17 참조)을 사용할 수 있다.

관측 가능한 환율을 조정없이 사용

- A12 문단 19A에서 요구되는 현물환율을 추정할 때, 관측 가능한 환율이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한다면 관측 가능한 환율을 조정 없이 사용할 수있다. 관측 가능한 환율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 기업이 교환가능성을 평가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한 현물환율(문 단 A13~A14 참조)
 - (2) 통화의 교환가능성이 회복된 후 기업이 특정 목적을 위해 다른 통화를 처음으로 획득할 때의 환율 (첫 번째 후속환율)(문단 A15~A16 참조)

다른 목적을 위해 관측 가능한 환율의 사용

A13 특정 목적을 위해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통화이더라도 다른 목적을 위해 해당 통화로 교환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재화를 수입하기 위하여 한 통화를 획득할 수 있지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른 목적을 위해 관측 가능한 환율이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으며, 그 러한 경우에는 해당 환율을 추정 현물환율로 사용할 수 있다.

- A14 이러한 관측 가능한 환율이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는지 평가할 때, 무엇보다도 다음의 요소를 고려한다.
 - (1) 여러 관측 가능한 환율이 존재하는지 여부 둘 이상의 관측 가능한 환율이 존재한다는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해 다른 통화를 획득하는 것을 장려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환율이 설정되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측 가능한 환율에는 '우대(incentive)'나 '불이익(penalty)'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 (2) 교환 가능한 목적 제한적인 목적(예: 비상물자 수입)으로만 다른 통화를 획득할 수 있다면 관측 가능한 환율은 일반적인 경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 (3) 환율의 특성 관측 가능한 변동환율은 관련 당국의 정기적인 개입을 통해 설정된 환율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실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더 높다.
 - (4) 환율이 갱신되는 빈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관측 가능한 환율은 매일(또는 그보다 더 자주) 갱신되는 관측 가능한 환율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할 가능성이 낮다.

첫 번째 후속환율의 사용

- A15 측정일에 특정 목적을 위해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통화도 후 속적으로 교환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첫 번째 후속 환율이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환율을 추정 현물환율로 사용할 수 있다.
- A16 첫 번째 후속환율이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는지 평가할 때 무엇보다도 다음 요소를 고려한다.
 - (1) 측정일과 교환가능성이 회복된 날짜 사이의 시간-이 기간이 짧을수록 첫 번째 후속환율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실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더 높다.
 - (2) 인플레이션율- 초인플레이션 상태(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

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명시된 바와 같은)를 포함하여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경제에서는 가격은 종종 빠르게 변화하며 하루에도 여러번 변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제의 통화에 대한 첫 번째 후속환율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른 추정 기법의 사용

A17 다른 추정 기법을 사용하는 기업은 집행 가능한 권리 및 의무를 창출하지 않는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에서 이루어진 교환거래의 환율을 포함한 관측 가능한 환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문단 19A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환율을 조정한다.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의 공시

- A18 문단 57A의 공시 목적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의 정도를 고려한다. 문단 A19~A20에서 정한 정보와 문단 57A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 A19 문단 57A를 적용할 때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 (1)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통화의 명칭 및 그러한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도록 만드는 제한사항에 대한 설명
 - (2) 영향을 받는 거래에 대한 설명
 - (3)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 (4) 사용된 현물환율 및 그 환율이 다음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 (가) 조정되지 않은 관측 가능한 환율(문단 A12~A16 참조)
 - (나) 다른 추정 기법을 사용하여 추정된 현물환율(문단 A17 참조)
 - (5) 기업이 사용한 추정 기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추정 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와 가정에 대한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
 - (6)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음으로 인해 기업이 노출되는 각 유형의 위험에 대한 질적 정보와 각 유형의 위험에 노출되는 자 산과 부채의 성격과 장부금액

- A20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표시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거나, 표시통화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다음 사항도 공시한다.
 - (1) 해외사업장의 명칭, 해외사업장의 유형(종속기업, 공동영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 및 주요 사업 장소
 - (2) 해외사업장의 요약 재무정보
 - (3) 기업이 손실에 노출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포함하여, 기업이 해 외사업장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계약약정의 내용과 조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07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의 제정(2007.11.23.)은 회계기준위원 회 위원 7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효익(위원장), 서정우(상임위원), 김성남, 윤순석, 최상태, 황성식, 황인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3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의 개정(2023.12.2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중 8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한상(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박정혁, 윤재원, 이동근, 전영순

적용사례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의 적용사례 개정

이 적용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적용사례들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대해 설 명하지만 해석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IE1 이 사례들은 제시된 제한된 사실에 기초한 가상 상황에서 기업이 기업 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일부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 여준다. 사례의 일부 측면이 실제 사실관계에 존재할 수 있지만, 사례의 사실관계는 단순화되었으며,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를 적용할 때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이 사례들은 기업회계기준 서 제1021호의 모든 요구사항을 설명하지 않으며, 요구사항을 추가하지 도 않는다.

교환가능성

- IE2 사례 1~3은 기업이 한 통화가 교환 가능한지 평가하는 방법을 보여 준다(문단 8, 8A~8B 및 A2~A10에 명시된 1단계에 해당). 사례 4~5는 한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업이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방법을 보여준다(문단 19A 및 A11~A17에 명시된 2단계에 해당). 다섯 가지 사례 모두에서 다음을 가정한다.
 - (1) 기업 X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는 PC이다. 기업 X는 연결재무제표 를 작성한다.
 - (2) 기업 X는 해외사업장인 종속회사 Y를 보유한다. 기업 Y의 기능통화는 법인 Y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통화인 LC이다. 관련 당국은 LC와 다른 통화 간 교환가능성을 관리한다.

1단계: 통화가 교환 가능한지 평가 (문단 8, 8A~8B와 A2~A10)

사례1 - 기간범위

IE3 기업 Y의 국가 내 관련 당국은 행정 절차를 완료한 다음에만 기업이 LC를 PC로 교환 가능하도록 한다. 해당 당국은 PC를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이 PC를 요청할 때 PC의 사용 계획을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일반

적인 경우, 기업은 N일(즉, N일은 관할 당국이 행정 절차에 따라 확인을 수행하고 PC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간) 후에 PC를 획득한다.

IE4 기업 X는 N일을 이 교환메커니즘을 통해 LC를 PC로 교환하는 거래에 적용되는 정상적인 행정 처리상의 지연으로 본다. 기업 X는 요청 후 N일 이내에 PC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 문단 A2~A10의 다른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LC를 PC로 교환 가능하다고 본다.

사례2 - 시장 또는 교환메커니즘

- IE5 기업 Y가 소재하는 국가의 관련 당국이 PC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자신이 관리하는 교환메커니즘을 통한 PC의 교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이러한 교환메커니즘이 없는 경우, 개별 환전상이 당국이 설정하지 않은 환율로 LC를 PC로 교환하는 거래를 정산한다. 이러한 교환 거래는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지 않으며, LC를 PC로 교환하는 거래가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다른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 IE6 기업 X는 LC가 PC로 교환 가능한지를 평가할 때, LC를 PC로 교환하는 거래가 집행 가능한 권리 및 의무를 창출하는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만을 고려한다. 기업 X는 개별 환전상과의 교환 거래는 집행 가능한권리와 의무를 창출하지 않으며, LC를 PC로 교환하는 거래가 그러한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다른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LC가 PC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

사례3 - 다른 통화를 획득하는 목적

- IE7 기업 Y가 소재하는 국가의 관련 당국은 기업이 식품 및 의약품 수입 이외의 목적으로 PC를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IE8 기업 X는 기업 Y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환산할 때, 기업 X가 기업 Y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할 목적으로 PC를 획득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기업 X는 이러한 목적으로 PC를 획득할 수 없으므로 기업 X는 LC가 PC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 기업 X가 식품 및 의약품 수

입 목적으로 PC를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평가와 무관하다.

2단계: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현물환율의 추정 (문단 19A와 문단 A11~A16)

사례4 - 다른 목적을 위해 관측 가능한 환율의 사용 (문단 A11~A14)

사실관계

- IE9 20X1년 12월 31일 기업 Y가 소재하는 국가의 관련 당국은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할 목적으로 PC를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을 제외하고 기업은 PC를 획득할 수 있으며 LC:PC 환율은 변동환율이다. LC를 PC로 교환하는 거래에는 하나의 환율만 적용되며, 이 환율은 하루에 여러 번 갱신된다.
- IE10 20X1년 12월 31일 측정일에 기업 X는 기업 Y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PC를 획득할 수 없으므로, 기업 X는 LC가 PC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

혀물화율의 추정

- IE11 기업 X가 LC는 PC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으므로 기업 X는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는 현물환율을 추정해야 한다.
- IE12 기업 X는 문단 A11~A14를 적용하여 기업의 순투자를 실현할 목적으로 관측 가능한 LC:PC 환율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 이를 위해 관측 가능한 환율이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1) 여러 환율이 존재하는지 여부 LC와 PC 사이에 관측 가능한 환율 이 하나만 존재한다.
 - (2) 교환하는 목적 기업 X는 기업 Y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시키는 거 래 이외의 거래를 위해 PC를 획득할 수 있다.
 - (3) 환율의 특성 관측 가능한 환율은 변동환율이다.

- (4) 환율이 갱신되는 빈도 관측 가능한 환율은 하루에 여러 번 갱신된다.
- IE13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기업 X는 관측 가능한 LC:PC 환율이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기업 X는 기업 Y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환산할 때 해당 관측 가능한 환율을 추정 현물환율로 사용할 수 있다.

사례 5 - 첫 번째 후속환율의 사용 (문단 A11~A12와 문단A15~A16)

사실관계

- IE14 20X1년 12월 31일 기업 Y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는 초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고 있다. 기업 Y가 소재하는 국가의 관련 당국은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PC를 획득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20X2년 4월 30일부터 해당 당국은 기업이 해당 목적으로 PC를 획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IE15 20X1년 12월 31일 측정일에 기업 X는 기업 Y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PC를 획득할 수 없으므로, 기업 X는 LC가 PC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

현물환율의 추정

- IE16 기업 X가 LC를 PC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으므로 기업 X는 무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는 현물화율을 추정해야 한다.
- IE17 기업 X는 문단 A11~A12 및 A15~A16을 적용하여 통화의 교환가능성이 회복된 후 기업이 다른 통화를 처음으로 획득할 때의 환율(첫 번째 후속환율)을 사용할 수 있을지 고려한다. 이를 위해 해당 첫 번째 후속환율이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1) 측정일과 교환가능성이 회복된 날짜 사이의 시간 측정일로부터 4 개월 후 교환가능성이 회복된다.
 - (2) 인플레이션율 기업 Y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는 초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고 있다.

IE18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기업 X는 첫 번째 후속환율이 측정일의 일반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기업 X가 기업 Y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하는 목적 상 첫 번째 후속환율은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업 X는 필요에 따라 해당 환율을 조정하여 기업 Y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는 환율을 추정할 수 있다.

결론도출근거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정시 기준서를 제정한 과정 등을 기술하여 결론도출근거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IASB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므로, IASB가 동 기준 제정시 제시한 결론도출근거를 반영하여 제공함으로써 이를 갈음하고자한다.

다만,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 절차에 참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와 구 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결론도출근거로 별도 제시한다.

결론도출근거 목차

IAS 21 '환율변동효과(The Effects of Changes in Foreign Exchange Rates)'의 결론도출근거

	문단번호
도입	BC1~BC3
기능통화	BC4~BC9
표시통화	BC10~BC14
환산방법	BC15~BC23
외환차이의 자본화	BC24~BC25F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BC25A~BC25F
영업권과 공정가치 조정액	BC26~BC32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일부 처분	BC33~BC40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부분적 처분(2011년 개정)	BC36~BC40
교환가능성 결여	BC41~BC65
2023년 8월 개정의 배경	BC41
통화가 교환 가능한지 평가	BC42~BC52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현물환율의 추정	BC53~BC57
공시	BC58~BC62
경과규정	BC63~BC65

IAS 21의 결론도출근거 관련 참고사항

-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주체(IASB, IASC, IFRIC 등)가 IFRS를 제정한 과정과 외부의견 등에 대한 논의내용 등을 기술한 것이다.
- 이 결론도출근거는 국제회계기준의 이용자를 위해 IASB가 작성한 문서이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므로 원문을 번역하여 제공한다.
- 이 결론도출근거에 언급되는 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에 각각 대응되는 K-IFRS의 개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대응표를 제시한다.

	국제회계기준	한글	국채택국제회계기준
Framework	Conceptual Framework	개념체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for Financial Reporting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IAS 27	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IAS 29	Financial Reporting in Hyperinflationary Economies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IAS 36	Impairment of Assets	제1036호	자산손상

IAS 21 '환율변동효과(The Effects of Changes in Foreign Exchange Rates)'의 결론도출근거

이 결론도출근거는 IAS 21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2005년 12월에 발표된 개정 IAS 21과 관련하여 문단 BC1을 수정하였고 문단 BC25A-BC25F를 추가하였다.

이 결론도출근거의 용어는 2007년 개정된 IAS 1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되지는 않았다.

도입

- BC1 IASB가 2003년에 IAS 21과 2005년 12월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를 개정하기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있게 고려하였다.
- BC2 2001년 7월에 IASB는 최초 의제의 하나로서 IAS 21을 포함한 일부 기준서의 개선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작업은 증권감독기구, 전문직 회계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기준서와 관련하여 제기한 질문과 비판을 고려하여 수행되었다. 이러한 개선 과제의 목적은 대체적 회계처리, 중복되는 사항 및 기준서 간에 상충되는 내용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고, 정합화 문제를 다루며, 그 밖의 사항을 개선하는 데 있었다. 2002년 5월에 IASB는 2002년 9월 16일을 외부검토의견제출 마감일로 하여 IAS 연차개선 (Improvements to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공개초안을 발표하였고 공개초안과 관련하여 160여개의 외부검토의견서를 받았다.

BC3 IASB의 의도는 IAS 21이 정한 환율변동효과의 회계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방법을 재고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결론도출근거에서는 IAS 21과 관련하여 IASB가 재고하지 않은 규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기능통화

- BC4 '보고통화'라는 용어는 과거에 '재무제표를 보고할 때 사용하는 통화'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별도개념으로 구성된다[이 두 가지 개념은 SIC 19 '보고통화: IAS 21과 IAS 29에 따른 재무제표의 측정과 표시(Reporting Currency-Measurement and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under IAS 21 and IAS 29)'에서 확인된다]:
 - · 측정통화(기업이 재무제표의 항목을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통화)
 - · 표시통화(기업이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

IASB는 이러한 두 개념을 구분하는 SIC 19의 방법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 전 IAS 21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IASB는 '기능통화'라는 용어가 '측정통화'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므로 좀 더 일반적인 용어를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BC5 IASB는 측정통화의 결정에 관한 SIC 19의 지침은 기업이 여러 통화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통화를 선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일부 위원들은 SIC 19가 거래를 표시하는 통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반면, 그러한 거래의 가격을 결정하는 실제 경제는 경시하였다고 믿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IASB는 기능통화를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로 정의하였다. 또한 IASB는 기능통화의 결정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였다(이 기준서 문단 9~14 참조). 이 지침은

SIC 19 및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상응하는 지침을 많이 참고하고 있으며, 일부 요소는 다른 요소들보다 더 중요시할 만하다는 IASB의 결정을 반영하고 있다.

- BC6 또한 IASB는 보고기업의 일부인 해외사업장(개정 전 IAS 21에서 설명하듯이)이 '지배기업'¹⁾의 기능통화와 다른 기능통화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IASB는 '보고기업 영업장의 확장인 것처럼 영업을 하는'²⁾ 보고기업의 일부인 해외사업장이 지배기업과다른 주된 경제 환경에서 영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기능통화는 언제나 동일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 BC7 따라서 이는 보고기업의 일부인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에 반영할 때 그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환산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로 측정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보고기업의 일부인 해외사업장과 해외기업한1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와 지배기업의 기능통화가 다르다면 해외사업장은 해외기업에 해당하며 이 기준서의 문단 38~49의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 BC8 또한 IASB는 해외기업과 보고기업의 일부인 해외사업장을 구별하는 것에 대한 개정 전 IAS 21의 원칙은 영업장의 기능통화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러한 원칙을 이 기준서에 반영하였다.
- BC9 IASB는 문단 9의 지표들이 기능통화를 결정하는 주된 지표이고 문단 10과 11은 이차적 지표라는 데에 동의하였다. 그 이유는 문단 10

¹⁾ 여기에서 '지배기업'이라는 용어는 종속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점, 관계기업 또는 공동 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광의로 사용된다.

²⁾ IAS 21(1993년 개정), 문단 24

한1) 개정 전 IAS 21에서는 'foreign entity'를 보고기업의 일부가 아닌 해외사업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과 11의 지표들은 기업이 영업하는 주된 경제 환경과 관련이 없지 만 기업의 기능통화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조증거를 제공하 기 때문이다.

표시통화

- BC10 또 다른 논제는 기업이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또는 통화들)로 재무제표를 표시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이다. 일부 위원들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그들은 기업이 영업하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는 기업의 거래와 사건의 경제적 효과를 가장 유용하게 표현한다고 믿는다. 여러 가지 기능통화를 사용하는 영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결실체의 경우 경영자가 연결실체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관리하고 통제할 때 사용하는 기능통화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일부 위원들은 믿는다. 또한 기업이 한 가지 이상의 통화로 재무제표를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그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일부 위원들은 믿는다. 이러한 관점의 지지자들은 위에서 설명한 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로 표시하는 것은 IFRS의 범위를 벗어난 '편의적 환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 BC11 다른 위원들은 표시통화의 선택을, 예를 들어 연결실체 내의 중요한 기업들 중 한 기업의 기능통화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은 쉽게 피해갈 수 있다. 다른 통화로 재무제표를 표시하고자 하는 기업은 그 통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하는 실질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영업장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 BC12 또한 다른 위원들은 글로벌화의 추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으므로 기업이 어떤 통화로도 재무제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대부분의 거대 연결실체가 하나의 기능통화를 가지고 있는 적러 영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어

떤 통화가 표시통화가 되어야 하는지 또는 왜 어떤 통화가 다른 통화보다 선호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또한 그러한 연결실체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관리하고 통제할 때 경영자가 단일의 통화만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추가적으로, 어떤 나라에서는 기업이 기능통화가 아닌 현지통화로 재무제표를 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3) 따라서 만일 IFRS가 재무제표를 기능통화로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면 어떤 기업은 두가지의 재무제표, 즉 기능통화로 작성된 IFRS에 따른 재무제표와다른 통화로 작성된 현지규정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 BC13 IASB는 앞의 문단에서 주장하는 바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어떤 통화(또는 통화들)로든지 재무제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 BC14 또한 IASB는 이 기준서가 기업이 보충적 정보로서 '편의적 환산'의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한 '편의적 환산'은 일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표시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로 재무제표(또는 재무제표에서 발췌한 일정 부분)를 표시할 수 있다. '편의적 환산'은 이 기준서가 요구하는 환산방법이 아닌 다른 환산방법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기준서에 따라 환산되고 IFRS에서 요구하는 정보와 구분될 수 있도록이러한 유형의 '편의적 환산'은 보충적 정보로서 명확히 구별되어야한다.

환산방법

BC15 IASB는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다른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데 어떤 환산방법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³⁾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영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 그 나라의 상장요건에 따라 재무제표를 공표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BC16 IASB는 환산방법이 기능통화를 다른 통화로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 와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다른 통화로 재무제표를 표시하는 방식이 대상 항목을 측정하는 방식을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 환산방법은 기능통화로 측정된 대상 금액을 단지 다른 통화로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BC17 이러한 상황에서 IASB는 두 가지 가능한 환산방법을 고려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최근의 마감환율로 모든 금액(비교표시된 금액을 포함)을 환산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적용하기가 간편하고, 새로운 손익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자산에 대한 수익률과 같은 비율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대상 금액을 단순히 다른 통화로 표시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므로 기능통화로 측정된 금액들 사이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어떤 새로운 손익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을 지지한다.

BC18 IASB가 고려한 두 번째 방법은 개정 전 IAS 21에서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환산할 때 요구하였던 방법4이다. 이 방법은 해외사업 장의 재무제표를 아래의 어느 방법으로 환산하든지 표시통화로는 동일한 금액이 나타난다.

- (1) 먼저 연결실체의 다른 기업(예: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로 환산한 다음 표시통화로 환산한다.
- (2) 직접 표시통화로 환산한다.

BC19 이 방법은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기 전에 다국적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를 표시하는 통화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규모가 큰 많은 연결실체는 하나의 기능통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기능통화를 가지고 있는 여러 영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한 기업들의 경우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기 전에 금액을 표시하기 위하여 어떤 기능통화를 선택하여야 하

⁴⁾ 기업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기능통화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무상태표항목은 마감환율로 손 익계산서항목은 실제(또는 평균)환율로 환산한다.

는지 또는 왜 어떤 통화가 다른 통화보다 선호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이 방법에 따르면, 지배기업의 기능통화가 표시통화인 종속기업의 경우와 이와 동일한 해외사업장이 없는 기업의 경우 표시통화로 동일한 금액이 산출된다.

- BC20 IASB는 두 번째 방법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어떤 기업(해외 사업장이 없는 기업, 지배기업 또는 연결실체 내의 한 사업장)의 재 무제표의 기능통화가 보고기업이 사용하는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에 는 이 기준서의 문단 38~49에서 규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환산한다.
- BC21 비교표시하는 금액의 환산과 관련하여 IASB는 다음의 기업에 대하여 SIC 30 '보고통화: 측정통화에서 보고통화로의 환산(Reporting Currency-Translation from Measurement Currency to Presentation Currency)'에서 요구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 (1)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기업(비교표시하는 대차대조표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대차대조표일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비교표시하는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 (2)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이고 비교표시하는 금액이 모두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로 환산되는 기업(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모든 항목을 최근 대차대조표일의 마감환율로 환 산한다)
- BC22 그러나 IASB는 기업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이고 비교표시하는 금액이 초인플레이션이 아닌 경제의 표시통화로 환산되는 경우에는 비교표시하는 금액의 환산방법으로 SIC 30의 방법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그러한 경우 SIC 30의 방법은 인플레이션과 환율변동 모두의 영향에 대하여 전기 재무제표에 나타나 있는 비교표시 금액을 재작성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만일 환율이 관련된 두 경제 사이의 물가수준 차이를 완전하

게 반영한다면 SIC 30의 방법을 따르면 과거의 재무제표에 당기금 액으로 보고하였던 것과 동일한 금액이 비교표시되는 금액으로 나타날 것이다. 더욱이 IASB는 과거에 관련 금액이 초인플레이션 경제가 아닌 경제의 표시통화로 이미 표시되었고 그들을 수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IASB는 비교표시되는 모든 금액은 과거 재무제표에 표시된 금액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즉, 가격수준 또는 환율의 후속적 변동과 관련된 조정은 없다).

BC23 IASB는 다른 환산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전체 재무제표에서 발췌한 내용과 같은 보충적 정보를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로 보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SIC 30의 공시요구사항 대부분을 이 기준서에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이 기준서 문단 57 참조). 이러한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할 수 있지만 IFRS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정보와 IFRS에 따라 작성한 정보를 정보이용자가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IFRS의 적용대상이 아닌 정보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를 정보이용자에게 알려준다.

외환차이의 자본화

BC24 개정 전 IAS 21은 '위험회피를 위한 현실적인 실무적 수단이 없고, 최근의 자산취득에서 직접 발생한 부채로서 결제될 수 없는 부채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통화의 평가절하나 가치하락'5)으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에 대하여 선택적 회계처리방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원칙적인 회계처리방법은 그러한 외환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었다. 허용되는 대체적인 처리방법은 그러한 외환차이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었다.

BC25 IASB는 환산손실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용되는 대안(자산으로 인식하는 방법)은 Framework()과 일관되지 않는다

⁵⁾ IAS 21(1993년 개정), 문단 21

고 보았다. 더욱이 각국의 회계기준제정기구도 환산손실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허용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한다면 정합성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자산은 IAS 29에 따라서 재작성될 것이다. 따라서 환산손실 중 초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부분의 효과는 IAS 29에서 고려된다. 이러한 모든 이유 때문에 IASB는 허용한 대체적인방법을 삭제하고 관련된 SIC 해석을 폐지하였다.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BC25A 문단 32의 원칙은 사실상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분인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보고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자본의 별도 항목7)으로 최초에 인식된다는 것이다. IAS 21에 대한 2003년의 개정내용에는 보고기업이나 해외사업장 중 하나의 기능통화로 그 화폐성항목을 표시할 것을 요구하는 이러한 원칙에 대한 지침이 있었다. 개정 전 IAS 21은 그러한 지침을 포함하지 않았다.

BC25B 그러한 요구사항은 다음의 예로 설명할 수 있다. 지배기업 P는 종속기업 S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지배기업 P의 기능통화는 영국 파운드화이다. 종속기업 S의 기능통화는 멕시코 페소화이다. 지배기업 P는 종속기업 S에게 미화 100달러를 대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다. IAS 21(2003년 개정)은 이 대여금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를 지배기업 P의 연결재무제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만약 이 대여금을 파운드화나 멕시코 페소화로 표시하여야 한다면, 그러한 외환차이는 지배기업 P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자본항목으로 최초 인식할 것이다.

⁶⁾ IASB가 2001년에 채택하여 이 기준서가 전면개정되었을 당시 시행 중이었던 IASC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말한다.

^{7) 2007}년 IAS 1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으로 그러한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BC25C 개정된 IAS 21이 2003년에 발표된 후 이해관계자들은 다음의 관점을 제기하였다.

- (1) 해외사업장에 대한 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을 보고기업이나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이다. 해외사업장의 현지국 통화보다 전환이 더 용이한 통화로 표시되는 화폐성항목이 그 예이다.
- (2) 보고기업이나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되는 해외사업장에 대한 투자는, 그 투자가 보고기업이나 해외사업 장의 기능통화로 표시되는 경우보다 그 연결실체를 더 큰 외 환차이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단지 해외사업장의 개별재무제표 와 보고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외환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 (3) 문단 32의 '보고기업'이라는 용어는 단일기업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배기업과 모든 종속기업으로 구성되는 연결실체로 해석하여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그 결과, 이해관계자들은 화폐성항목이 해외사업장과 보고기업 사이에 거래되어야만 하는지 또는 해외사업장과 연결실체의 다른 기업 즉, 보고기업이나 다른 종속기업 사이에 거래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BC25D IASB는 문단 15에서 언급하는 화폐성항목의 성격은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투자와 유사하다고 보았다. 즉, 그 화폐성항목은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를 자본의 별도 항목으로 처음에 인식한다는 문단 32의 원칙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그 화폐성항목을 회계처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IASB는 연결재무제표에서의 회계처리는 화폐성항목을 표시하는 통화나 연결실체 내의 어떤 기업이 해외사업장과 거래를 하느냐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BC25E 따라서 IASB는 2005년에 IAS 21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 개정에서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연결재무제표에서 별도 자본항목으로 최초 인식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사항은 화폐성항목의 통화와 관계없이, 또한 화폐성항목이 보고기업이나 다른 종속기업과의 거래결과로 생긴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BC25F 또한 IASB는 보고기업의 관계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외사업장에 대한 투자는 해외사업장에 대한 보고기업의 순투자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IAS 21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이 개정의 제안은 문단 15의 원칙이 명확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세부규칙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재심의에서 IASB는 그러한 외부검토의견에 동의하고 제안된 개정을 진행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영업권과 공정가치 조정액

- BC26 개정 전 IAS 21에서는 영업권 및 해외기업의 취득에서 발생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을 선택적으로 (1) 마감환율 또는 (2) 역사적거래환율로 환산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 BC27 IASB는 개념적으로 올바른 회계처리는 영업권과 공정가치 조정액이 다음의 어느 항목의 일부에 해당하는지에 좌우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 (1) 취득된 기업의 자산과 부채(이는 마감환율로 공정가치 조정액을 환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지배기업의 자산과 부채(이는 역사적환율로 공정가치 조정액을 환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BC28 IASB는 공정가치 조정액이 취득된 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 에 명확하게 관련되므로 마감환율로 환산하여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BC29 영업권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한데 그 이유의 하나는 영업권이 잔여가치로 측정된다는 점이다. 또한 IASB는 취득된 기업이 서로 다른 기능통화를 사용하는 사업(예를 들어, 만일 취득된 기업이 다국적기업인 경우)으로 구성된다면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IASB는 손상과 관련하여 영업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특히 영업권을 각기 다른 기능통화의 수준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회계처리와 평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BC30 한 가지 관점은 지배기업이 많은 서로 다른 기능통화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구성되는 다국적 사업장을 취득할 때, 영업권은 지배기업 /취득자의 자산으로 처리되어 연결수준에서 손상에 대한 평가를 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위원들은 경제적인 면에서 영업권은 지배기업이 지급한 취득가격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배기업의 자산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그들은 영업권을 다수의 취득된 사업에 배분하여 각 사업의 다양한 기능통화로 환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는다. 오히려 지배기업의 자산으로 처리되므로 영업권은 외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그것과 관련된 환산차이는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들은 그러한 영업권은 연결수준에서 손상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영업권을 취득된 해외사업장안의 각기 다른 기능통화와같은 하위 수준으로 배분하거나 '세분화'는 논리에 어긋나게 되는것이다.

BC31 나머지 위원들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영업권을 취득 된 기업에 대한 지배기업 순투자의 일부라고 믿는다. 그들의 관점 은, 영업권의 유의적인 일부가 분리해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형자산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업권을 취득된 기업의 다른 자산, 특히 무형자산과 다르지 않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영업권은 오직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 때문에 발생하며 그 해외기업에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고보았다. 마지막으로, 취득된 기업이 서로 다른 기능통화를 사용하는여러 가지 사업으로 구성될 때 영업권의 지속적인 인식을 뒷받침하는 현금흐름이 그러한 서로 다른 기능통화로 창출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BC32 IASB는 앞의 문단에서 설명한 이유에 공감하게 되어 영업권은 해외사업장의 자산으로 처리하고 마감환율로 환산한다고 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영업권은 취득된 해외사업장의 각 기능통화수준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이는 영업권이 외화환산 목적으로 배분되는 수준이손상평가가 이루어지는 수준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은 영업권에 대한 손상평가가 이루어지는 수준을 결정할 때 IAS 36의 요구사항을 따라야 한다.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일부 처분8)

BC33 사업결합과제의 제2단계에서, IASB는 기업에 대한 지배력, 중대한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IAS 21의 목적상 처분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전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이전의 종속기업이 이전 지배기업의 관계기업 또는 공동지배기업》이 되더라도 종속기업의 처분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와 유사하게 투자자가 관계기업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거나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처

⁸⁾ 이 소제목과 문단 BC33과 BC34는 2008년 사업결합과제의 제2단계의 일부인 IAS 27의 개정의 결과로 이 결론도출근거에 추가되었다. IAS 27의 연결 요구사항은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0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회계처리 요구사항은 변경되지 않았다.

^{9) &#}x27;공동지배기업'은 IAS 31에서 정의되었다.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1은 IAS 31을 대체하였고 용어를 변경하였다.

분으로 회계처리한다. IASB는 투자성격의 변동은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이라고 결정하였다.

BC34 IASB는 또한 사업결합과제의 제2단계에서 다음을 결정하였다.

- (1)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 분의 변동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 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한다.
-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지배기업은 그 종속기업의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외환차이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을 자본에서 당기손 익으로 재분류(재분류조정)한다.
- (3) 투자자가 관계기업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거나 공동 지배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투자자는 그 관계 기업이나 공동지배기업의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기타포괄손익 으로 인식된 환율차이를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 류조정)한다.

이 기준서 문단 $48A \sim 49$ 의 개정은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일부 처분에 대한 이러한 결정을 반영한다.

BC35 2008년 5월에 발표된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원가(Cost of an Investment in a Subsidiary, Jointly Controlled Entity or Associate)' (IFRS 1과 IAS 27의 개정)의 일부로, IASB는 IAS 27을 개정하여 '원가법'의 정의를 삭제하였다. 원가법은 기업이 취득 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에서 분배받은 금액만을수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였다. 그 이익을 초과하여 받은 분배금은 투자의 회수로 보아 투자자산의 원가를 감소시켰다. 결과적으로 IASB는 문단 49를 개정하여 취득전 이익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고 IAS 27 문단 38A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배당금은 IAS 21에서 순투자의 처분이나 일부 처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10).

^{10) 2011}년 5월에 발표된 IFRS 10에 의하여 연결 지침이 IAS 27에서 삭제되었으며 그 기준서는 '별도재무 제표(Separate Financial Statements)'로 재명명되었다. 배당금에 대한 회계처리 요구사항은 변경되지 않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부분적 처분(2011년 개정)

- BC36 공개초안 제9호 '공동약정'(ED 9 'Joint Arrangements')를 재심의하면서 IASB는 (지배력의 상실을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으로 특징짓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동지배력의 상실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의 상실을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으로 특징짓는 사업결합과제의 제2단계에서의 결정이 적절한지를 재고하였다. 만약 적절하다면, IASB는 IFRS 10에서의 요구에 따라 회계처리를 재조정할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IASB는 사건이 비록 유의적이지만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다고 결론내렸다. 지배력 상실의 경우, 지배·종속관계의 중단은 연결실체의 구성이 변경되기 때문에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게 된다.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상실되면 연결실체의 구성은 영향받지 않는다.
- BC37 또한 IASB는 유지되는 지분이 금융자산인 경우,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의 특성을 유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IFRS 9는 이미 그러한 경우에 유지되는 지분(즉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 BC38 유의적인 영향력이 유지되면서 공동지배력이 상실되는 경우, IASB는 공동지와 피투자자의 관계가 달라지며, 그에 따라 투자의 성격도 달라진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두 투자(즉 공동기업과 관계기업)는 계속 지분법을 사용하여 측정된다. 연결실체의 범위의 변경이나 측정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IASB는 공동지배력을 상실하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은 잔여 보유지분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도록 하는 사건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 BC39 따라서 IASB는 사업결합과제의 제2단계에서 도입되었던,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의 상실을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으로 특징 짓는 모든 기술을 삭제하였다.

았다.

BC40 또한 IASB는 공동지배력에서 유의적인 영향력으로 변경되는 것을 '전체' 처분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처분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이 유지되면서 공동지배력이 상실되는 데 대해 합의한 결론과 IAS 21의 규정을 일치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결과, IASB는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공동약정의 공동지배력을 상실하지만 유의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 공동약정의 해외사업장의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도록 결론지었다.

교환가능성 결여

2023년 8월 개정의 배경

BC41 2023년 8월,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교환가능성 결여'를 발표하고 기준을 개정하였다. 개정안은 기업이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지 여부와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사용할 현물환율을 결정할 때 일관된 접근 방식을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지 여부와 교환가능하지 않은 경우 사용할 환율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사이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가능하지 않은 상황은 비교적 드물게 발생할 것이나, 이러한상황이 발생하면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준서 적용에 대한 다양한 견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개정안을 개발할 때 IASB는 IFRS해석위원회의 의견과 2021년 4월에 발표된 공개초안 '교환가능성 결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고려하였다.

통화가 교환 가능한지 평가

BC42 한 통화의 다른 통화로의 교환가능성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교환 가능한'의 정의를 적용가능하게 하고, 기업이 이 정의를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기준서에서는 기업이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 상태를 명시하고 있다. 정의 및 관련 적용지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IASB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논의했다.

- (1) 기업이 다른 통화를 획득할 때 고려해야 할 기간은 무엇인가(문단 BC43~BC44 참조)?
- (2) 기업이 다른 통화를 획득할 수 있지만 획득할 의도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문단 BC45 참조)?
- (3) 기업이 다른 통화를 획득하기 위한 어떤 시장 또는 교환메커니즘을 고려하는가(문단 BC46 참조)?
- (4) 기업이 다른 통화를 획득하는 목적은 무엇인가(문단 BC47~BC50 참조)?
- (5) 기업이 다른 통화를 제한된 금액만 획득할 수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문단 BC51~BC52 참조)?

기간범위

- BC43 IASB는 다른 통화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정상적인 행정 처리상 의 지연을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 (1) 기준서 문단 8의 현물환율 정의에서 '즉시 인도'의 개념과 모순되지 않는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즉시 인도'의 개념은 통화를 교환할 때 행정적, 법적, 또는 규제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단기간의 시간을 포함한다.
 - (2) 그러한 지연 때문에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통화 교환에 정상적인 행정 처리상의 지연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 요구사항의 적용가능성을 향상시킨다. 기업이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평가할 때 정상적인 행정 처리상의 지연을 고려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는 부적절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BC44 IASB는 무엇이 '정상적인 행정 처리상의 지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적용지침을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러한 평가는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른 통화를 획득할 능력

BC45 IASB는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지 평가하는 것은 기업의 의도나 결정이 아니라 다른 통화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달라진

다고 결정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해당 순투자를 실현하는 거래를 체결할 의도가 없더라도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할 목적으로 한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할 수 있다. 이 요구사항은 기준서의 다른 요구사항(예: 해당 현물환율로 거래를 체결하려는 기업의 의도 또는결정과 관계없이 특정 금액을 다른 통화로 환산할 때 현물환율을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사항)과 일관된다.

시장 또는 교환메커니즘

BC46 IASB는 시장 또는 교환메커니즘의 성격과 유형이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IASB는 기업이 교환가능성을 평가할 때 특정 시장 또는 교환메커니즘(예: 정부가 관리하는 교환메커니즘)을 고려하도록 요구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IASB는 기업이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가능한지를 평가할 때 해당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하는 거래가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시장 또는 교환메커니즘만을 고려하도록 결정하였다.

다른 통화의 획득 목적

BC47 많은 국가(특히 환율이 변동환율인 국가)에서 두 통화 간 환율이 하나만 존재한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기업이 다른 통화를 사용하려는 목적이 환율을 변경하거나 기업이 다른 통화를 획득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통화의 경우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른 환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이 해당 통화를 획득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다른 통화를 획득하는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BC48 IASB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별도로 고려하였다.

- (1) 기업이 외화 거래를 기능통화로 보고하는 경우(문단 BC49 참조)
- (2) 기업이 기능통화 이외의 표시통화를 사용하거나 해외사업장의 경영 성과 및 재무상태를 환산하는 경우(문단 BC50 참조)
- BC49 기준서 문단 20~37은 기능통화로 외화 거래를 보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개별 외화 거래에 적용되고 그 거래와 관련된 화폐성 및 비화폐성 항목에 적용된다. IASB는 기업이 외

화 거래를 보고할 때, 각 개별 거래,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해 한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 즉 기업이 외화를 획득하는 목적이 개별 외화 거래 또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자산의 실현이나 부채의 결제에 있다고 가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해당 거래 또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자산을 실현하거나 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다른 통화를 획득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기준서 문단 26은 여러 가지 환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평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이 각 개별 거래, 자산 또는 부채를 평가하도록 요구한다고 해서 새로운 평가를 추가하는 것은 아니다.

- BC50 기준서 문단 38~49는 기능통화 이외의 표시통화의 사용과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환산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개별 자산이나 부채가 아닌 기업 또는 기업의 해외사업장의 모든 자산과 부채(즉, 순자산 또는 순부채)에 적용된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순자산 또는 순부채(또는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하거나 결제하는 거래의 관점에서 교환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다음에 주목하였다.
 - (1) 일부 국가에서 기업은 배당금 송금 시 지연을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연이 반드시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지연은 정상적인 행정처리 상 지연일수 있다. 또한, 기업이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복잡한 추정 기법을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문단 BC55 참조).
 - (2) 비록 기업이 종종 단일 거래를 통해 순자산을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기업은 순자산(또는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을 기간에 걸쳐 실현하는 것이 아닌 단일 거래에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한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기준서의 다른 요구사항과 일관된다(문단 BC49 참조). 기준서 문단 A10에 따라, 기업이 기업의 순자산이나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다른 통화의 전액을 획득할 수 없으나 경미한 금액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경우 해당통화는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다(문단 BC51~BC52 참조).

다른 통화를 단지 제한적인 금액만 획득할 수 있는 능력

- BC51 기업이 다른 통화를 단지 제한된 금액만 획득 가능할 수도 있다. IASB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다른 통화를 단지 경미한 금액 이상 획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다고 명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접근법은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어든 경우(IFRS 13의 문단 B37~B42 참조)의 IFRS 13 공정가치 측정 접근법과 유사하며, 이 경우 기업은 조정되지 않은 관측 가능한 가격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업이 다른 통화를 획득하는 시장에서의 거래 빈도가 매우 낮아 기업이 다른 통화를 경미한 금액만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은 기준서 문단 19A를 적용하여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이 경우 기업은 관측 가능한 환율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 BC52 요구사항을 개발할 때, IASB는 기업이 획득할 수 있는 다른 통화 금액의 유의성을 평가하는 수준(예: 기업이 각 거래 및 잔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 평가를 수행하는지 또는 합산하여 수행하는지 여부)을 고려하였다. IASB는 기업이 특정 목적을 위해 획득할 수 있는 다른 통화 금액의 유의성을 평가할 때 기준서 문단 A10에 설명된 총액법(aggregate method)을 사용하도록 결정하였다. 총액법(aggregate method)은 기업이각 거래 또는 잔액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대신, 기업이 획득할 수 있는 다른 통화의 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해야 하는 거래 또는 잔액의 총액(합계)과 비교하도록 요구한다.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현물환율의 추정

- BC53 IASB는 측정일에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해당 날짜의 현물환율을 추정한다고 결정하였다. 기준서 문단 19A의 목적은 기업이 측정일에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 교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할 때 적용될 환율을 추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접근법은 기업이 측정일에 자산을 매각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정상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할 때 결제하게 될 가격을 추정하여 자산이나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하다.
- BC54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업이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1)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으며, 기업별 및 국가별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 기업이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경제 모형은 다양하다. 이러한 모형의 복잡성이 각기 다르며, 투입변수로 사용하는 경제 요인(예: 인플레이션, 이자율, 국제수지 또는 국가의 생산성)도 각기 다르다. IASB는 단일의 특정 추정 기법이나 접근법을 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해당 기법이나 접근법이 과도한 부담없이 모든 가능한 상황에 대한 모든 관련 요인을 고려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3) 교환가능성 평가를 위한 요구사항은 기업이 한정된 상황에서만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4) 현물환율 추정에 내재된 불확실성은 추정에 기반한 다른 재무정보와 관련된 불확실성과 유사하다. 기업은 추정 현물환율 및 추정 기법에 대한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문단 BC58~BC62 참조).
- (5)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다른 IFRS 회계기준의 측정 요구사항과 일관된다. 예를 들어, IFRS 9 금융상품은 기대신용손실 측정을 위한 특정 기법을 명시하지 않고 대신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 BC55 IASB는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업이 반드 시 복잡한 추정 기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IASB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1) 관측 가능한 환율이 기준서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 은 조정 없이 관측가능한 환율을 추정 현물환율로 사용할 수 있음 을 명시한다(기준서 문단 A12 참조).
 - (2) 기업이 고려할 수 있는 관측 가능한 환율의 두 가지 예를 포함하고, 기업이 해당 관측 가능한 환율이 기준서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의 목록(모두 망라한 것은 아님)을 제시한다(기준서 문단 A13~A16 참조).
 - (3) 다른 추정 기법을 사용하는 기업은, 예를 들어, 집행 가능한 권리 및 의무를 창출하지 않는 시장 또는 교환메커니즘에 의한 교환 거래의 환율 등의 관측 가능한 환율에서 시작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환율을 조정하여 기준서 문단 19A에서 요구하는 현물환율을 추정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기준서 문단 A17 참조).

기타 고려사항

- BC56 IASB는 현물환율을 추정할 때 사용할 관측 가능한 환율의 서열체계를 명시하는 것이 더 유용한 정보의 제공 없이 비용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관측 가능한 환율의 서열체계는 기업이 다른 추정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 대비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경우라도 서열체계의 각 환율을 순차적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 BC57 기업이 다른 통화를 단지 제한된 금액만 획득할 수 있는 경우, IASB는 혼합환율(즉, 기업이 거래 또는 잔액의 일부에 대해 다른 통화를 획득할 수 있는 환율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추정 환율을 모두 반영하는 가중평 균환율)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할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환율의 사용을 허용하거나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1) 기업이 혼합환율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따라서 유의적 인 추가 효익의 제공 없이 작성자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 (2) 혼합 환율을 결정할 때 기업은 거래 또는 잔액의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만 관측 가능한 현물환율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 현물환율을 사용할 것이다. 기준서 문단 A10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면, 기업이 다른 통화를 단지 경미한 금액만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IASB는 대부분의 경우 혼합환율은 추정 현물환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공시

BC58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업이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것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추정은 기업에게 판단과 가정을 요구한다. 요구사항을 개발할 때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가 현물환율 추정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를 이해하는 데에도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용자들은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상황의 성격 및 재

무적 영향, 사용된 현물환율, 추정 프로세스 및 기업이 노출된 위험에 대한 정보가 이용자들의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이 기준서의 적용 가능한 공시 요구사항은 이용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 BC59 IASB는 기준서 문단 A19~A20의 일부 요구사항이 다른 IFRS 회계기준의 요구사항과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기업은 다른 기준서를 적용할 때 해당 문단에서 요구하는 정보 중 일부를 이미 제공하고 있을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이미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수도 있다.
 - (1) IFRS 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문단 B10 또는 B12~B13에 따른 해외사업장에 대한 요약재무정보
 - (2) IAS 1 '재무제표 표시'의 문단 125~133에 따라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론에 대한 정보
 - (3) IFRS 7 '금융상품: 공시' 와 IFRS 12의 공시 요구사항에 따라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통화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정성적 및 정량적 정보의 일부(또는 전부)
- BC60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기준서의 문단 A19~A20의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IASB는 기업이 다른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중복하여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 BC61 IASB는 교환가능성을 평가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IAS 1의 문단 122는 이미 기업의 경영진이 내린 판단으로서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준 판단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BC62 IASB는 보고기간 말에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보고기간 말에는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더라도 보고기간의 일부 기간 동안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도 문단 57A를 적용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경과규정

IFRS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

- BC63 IASB는 기업이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개정 사항을 소급 적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기대되는 효익이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준서 문단 60L~60M 의 경과규정을 개발하였다.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하였다.
 - (1) 개정 사항을 소급 적용하려면 기업은 과거 기간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한 다음 해당 과거 기간의 현물환율을 추정해야 한다. 많은 경우소급 적용은 사후 판단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후판단 없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 (2)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상황은 일반적으로 다른 상황보다 투자자에게 추세 정보가 덜 유용하도록 만드는 높은 인플 레이션과 그 밖의 경제적 사건을 수반한다. IASB는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는 보고일에 해 당 통화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를 이해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정 보를 입수하였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비교정보를 재작성하지 않 고 최초 적용일로부터 개정사항을 적용한다고 결론지었다.

BC64 IASB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1) 기준서의 관련 요구사항에서 기업이 특정 항목을 마감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최초 적용일의 추정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그 항목을 환산하도록 요구한다.
- (2) 다른 항목이 개정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환산되었더라도 기업이 재환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기업이 이러한 항목을 식별하고 적절한 환율을 추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기대되는 효익이 비용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 (3) 기업이 개정 사항을 처음 적용할 때 발생하는 효과를 다음에 대한 조정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 (개) 기업이 외화 거래를 보고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의 기초 잔액. 이 러한 거래의 경우 기업은 일반적으로 환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 식한다. 기업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환차이를 별도로 추적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복잡성을 초래할 것이다.

(나) 기업이 기능통화 이외의 표시통화를 사용하거나 해외사업장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를 환산하는 경우, 자본의 누적환산차이. 이 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일반적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환차이를 인식하고 이러한 차이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누적한다.

최초채택

- BC65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최초채택기업의 개정사항 소급 적용에 대해 특별히 면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 (1) IFRS 1은 재무제표에 외화 거래를 보고하는 최초채택기업에 대한 면 제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은 외화 거래를 보고할 때 IAS 21의 적용가능한 모든 요구사항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 (2) IFRS 1의 문단 D13 은 이미 최초채택기업이 모든 해외사업장 대한 누적 환산차이를 IFRS 전환일에 영(0)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기타 참고사항

국제회계기준과의 관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와 국제회계기준 제21호(IAS 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제 21호(IAS 21) '환율변동효과(The Effects of Changes in Foreign Exchange Rates)'에 대응하는 기준이다.

한국의 법률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부분이 제한적으로 수정되었다. 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대상기업과 적용시기를 명시하기 위하여 문단 한3.1, 한60A.1 및 한60A.2가 추가되었으며, 적용시기 이후 최초채택기업으로서 이 기준서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시행일과 경과규정, 기준서 등의 대체와 관련된 문단 58, 58A, 60A, 60H, 61, 62가 삭제되었다. 이러한 수정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동 국제회계기준에 추가한 문단은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에 '한'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구분 표시하였다. 그리고 동 국제회계기준의 문단을 삭제한 경우는 관련된 국제회계기준 문단번호 옆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이라고 표시하였다.

국제회계기준 제21호(IAS 21)의 준수

형식과 관련하여 수정된 위의 문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 호가 IAS 21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 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IAS 21을 준수하는 것이 된다.

이 기준서의 주요 특징

이 기준서는 환율변동효과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1. 기능통화에 의한 외화거래의 보고

- (1)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 (2) 보고기간말의 외화환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개)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 (내)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 산한다.
 - (F)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측정된 날 의 환율로 환산한다.
- (3)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하는 외환차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5)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보고기업의 별도재무제표나 해외사업장의 개별재무제표에서 당기 손익으로 적절하게 인식한다. 그러나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을 포함

하는 재무제표에서는 이러한 외환차이를 처음부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순투자의 처분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다.

(6) 기능통화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에 의한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적용한다.

2.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의 사용

- (1)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경영성과와 재무 상태를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로 확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 (내)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 따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2)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인 경우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개) 모든 금액을 최근 재무상태표 일자의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 (나) 다만, 금액을 초인플레이션이 아닌 경제의 통화로 환산하는 경우에 비교표시되는 금액은 전기에 보고한 재무제표의 금액으로 한다.
- (3)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인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다만, 초인플레이션이 아닌 경제의 통화로 환산하여 비교표시된 금액은 재작성하지 아니한다. 초인플레이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에 따라 더 이상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재작성을 중지한 날의 물가수준으로 재작성한 금액을 표시통화로 환산하기 위한 역사적원가로 사용한다.

- (4)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부채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 (5)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다.

제ㆍ개정 경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기준서를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였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23.12.22. 개정	'교환 가능성 결여'	Amendments to IAS 21
		Lack of Exchangeability
2010.08.27.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Annual Improvements to IFRSs
	연차개선	
2007.11.23. 제정	'환율변동효과'	IAS 21 The Effects of Changes in
		Foreign Exchange Rates

이 기준서는 타 기준서의 제·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11).

제・개정일자	타 기준서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 018.11.14.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Amendments to References to
	에서 '개념체계의 참조	the Conceptual Framework in
	에 대한 개정'	IFRS Standards
2017.05.22.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IFRS 16 Leases
	제1116호 '리스'	
2015.09.25.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제1109호 '금융상품'	
2011.11.18.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IFRS 10 Consolidated Financial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Statements
2011.11.18.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IFRS 11 Joint Arrangements
	제1111호 '공동약정'	_
2012.01.27. 개정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	Amendment to IAS 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Presentation of Items
		of Other Comprehensive Income
2 011.11.18.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IFRS 13 Fair Value Measurement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¹¹⁾ 아래 표의 순서는 개정안에 대한 최근 공표일 순으로 표시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 표'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제정의결일은 2011년 11월 18일이나 공표일은 2012년 11월 28일이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보다는 최근에 공표된 것이다.